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

1. 개정 이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4.2.17)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른 지침작성 기준 반영(별표1)

- 보관시설에서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등록 대상인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을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p> <p>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u>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u>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p>	<p>[별표 1] (현행과 같음)</p> <p>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u>물류창고는</u>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p>